

## **공동위원회 절차 규칙**

### **규칙 1**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("양 당사국")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("협정") 제22.2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확인한다.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공동위원회의 구성, 기능, 구조 및 회의 일정은 협정 제22.2조의 규정을 따른다.

#### **의제**

### **규칙 2**

각 공동위원회 회의의 잠정의제는 각 회의 개최 14일전보다 늦지 않은 때까지 양 당사국간 합의되어야 한다.

#### **회기간 채택되는 결정**

### **규칙 3**

공동위원회는 공식 공동위원회 회기간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.

#### **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**

### **규칙 4**

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협의체를 설

치한다. 동 협의체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할 것이다. 고위급 협의체에 참가하는 고위 공무원은 모든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작업을 조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책임을 갖는다.

#### 규칙 5

공동위원회는 협정 제22.2조제3항가목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에 의해 지정된 접촉선을 통보받는다.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서신을 포함한 모든 최종 문서는 협정 제22.1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지정하는 접촉선에 전달된다.

#### 규칙 6

공동위원회는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모든 기구에 각자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규칙 7

각 임시 및 상설 위원회,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는 공동위원회의 승인하에 자신의 절차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.

### 규칙의 개정

#### 규칙 8

공동위원회는 언제라도 동 절차규칙 또는 동 절차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